

《 2018년 2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

연번	홍 보 자 료	도 담당부서
1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감사관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	경제정책과
3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경제정책과
4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하세요!	토지정보과
5	3월 초·중학교 입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당부	보건행정과
6	암검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건행정과
7	봄 영농철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절약 생활화	농업정책과
8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	축 산 과
9	불법 소각 특별단속 실시	환경정책과
10	맥류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	농업기술원
11	경남대표도서관 이용 안내	경남대표도서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료제공 : 감사관실 ☎ 055-211-2187)

- 기 간 : 2018. 1. 15. ~ 4. 15.
- 신고대상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 고 대 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 영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영양급여 부정수급
- 의약품 리베이트
-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방법 : 110(또는 1398)을 통한 신고상담 및 서울·세종 부패·공익 침해신고센터, 위원회 홈페이지·청렴신문고·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구 분	유형 및 사례
사무장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요양·건보급여를 부정수급, '15.8월 총 200억 8,000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의료인이 아닌 자가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 46억원을 부정수급('13년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이 병원장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로 투자비용 회수 - 사무장이 본인·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건축회사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병원수익 편취 - 사무장이 광고회사와 결탁하여 광고비를 수십 배 부풀리는 방법으로 병원수익 편취(이상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약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 '14.11월 총 11억 4,087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의료법인을 10억원에 매수한 후 병원을 개원하고 의료재단에 편입시킨 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14년 부패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들이 의료인의 면허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10여개를 개설·운영('13년 부패신고) - 의료생활협을 설립해 A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 대표의사로 내세워 B병원 운영('14년 부패신고) - 개설의사를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무부장에게 병원운영권 임대('14년 부패신고)

과잉·허위 진료 (보험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진료비와 보험금 수령 -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 복귀 -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숙식과 술·담배 제공조건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입원 권유(이상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이 없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14년 부패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개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진맥, 처방 등 의료행위 실시('15년 부패신고) - 사무장이 골절환자에게 기브스를 전담 시술('13년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동 환자 대상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을 참여한 것으로 속이거나 레크리에이션 진행 후 심리극을 시행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 청구('17년 부패신고) -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를 도용하면서 유명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요양급여 14억여원을 부정수급('14년 부패신고) - 환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허위청구('14년 부패신고) * 진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납처리, 외래진료기록부 상 환자진료 및 X-ray촬영, 주사제 투입 등 일련의 진료행위가 0~1분 만에 처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리베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2억 731만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의원에 선지원금 12억 8,484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의사 212명에서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9억 3,881만원을 제공하고 2,036개 약국에 11억 3,86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제공('14년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허위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4억 4천만원 부정수급('16년 부패신고) - 요양원 원장이 파트타임 근무자, 식당종사자, 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 1억 4천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 1억 7천만원 부과('17년 부패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

(자료제공: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 055-211-3434)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수혜자 확대)**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생산직 뿐만 아니라 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노무 종사자 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사업체 규모 증가시에도 지속 지원)** 지원기간 도중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더 많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부여)** 당초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게도 경감 혜택을 부여**(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만 경감)
 -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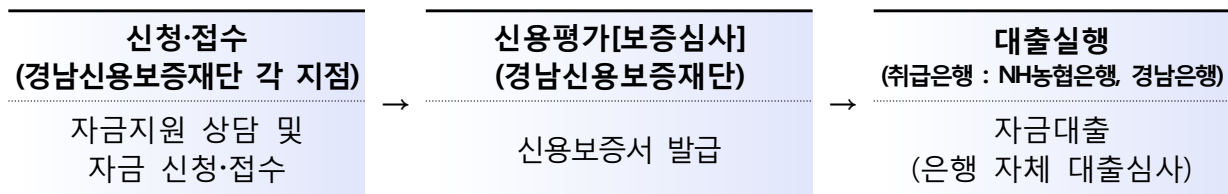
(자료제공: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 055-211-3434)

- 용자규모 : 연간 1,000억 원(상·하반기 각 350억 원, 특별자금 300억 원)
- 지원기간 : '17. 1. 15.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용자규모	대출한도 (업체당)	지원내용	비고	
일반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700억 원	1억 원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상반기 350억원	
특별 자금	희망두드림	저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100억 원	3천만원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연간
	청년창업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창업5년 이내 소상공인 ※ 별도 성공사다리 사업과 연계	100억 원	1억 원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연간
	일자리창출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100억 원	1억 원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연간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3.0%
-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지원절차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자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중인 업체 ○ 대환대출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8년 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참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하세요 !

(자료제공 :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45)

■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국 시행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https://irts.molit.go.kr> 참조)

■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

1.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BNK부산·대구은행)
 -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0.2%p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 부동산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2. 편리합니다.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주민센터, 수수료 면제)
- 부동산거래 실거래신고 자동 완료

3.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 준비물

- 매도인·매수인 명의의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

“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하세요 ! ”

3월 초·중학교 입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당부

(자료제공: 보건행정과 ☎ 055-211-4923)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학교에서 입학 후 3개월 동안 예방접종* 확인절차를 거쳐,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미접종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

- 확인대상 예방접종 : 6종

- 초등학교(4종):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 중학교(2종): Tdap 또는 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

- 확인절차 :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는 직접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실시

- ① 입학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 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②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

* 전국 1만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③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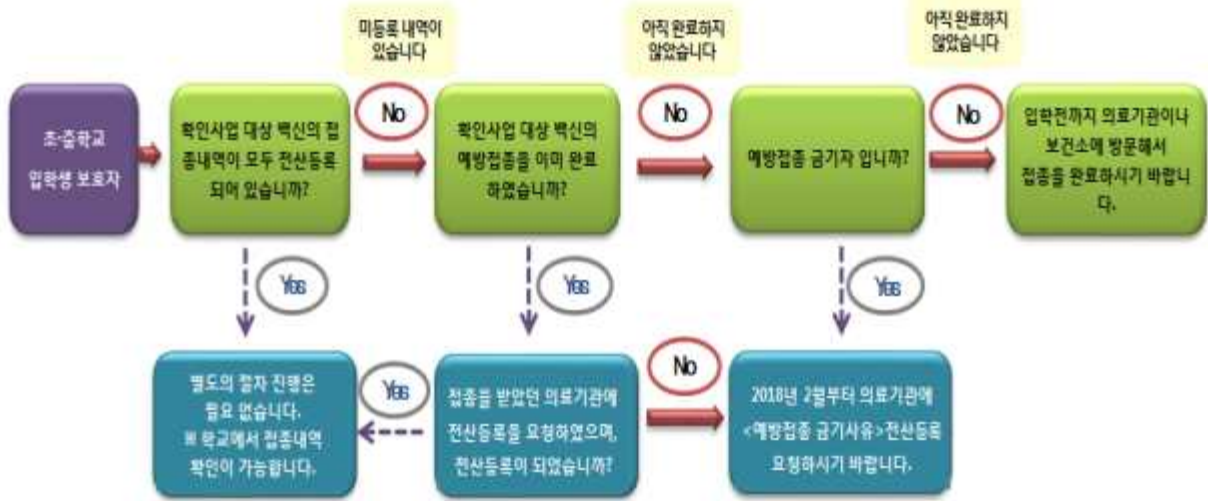
-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

*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

보호자 안내

[초·중학교 입학어린이 보호자의 예방접종 완료현황 확인 절차]

Q1. 2018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현황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확인 대상 예방접종: (초등학교)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인터넷 민원24,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Q2. 2018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 초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중학교 입학생은 학교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접종 2종 [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단, 만 7세 이후에 Td를 접종한 어린이는 마지막 Td 접종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Tdap 또는 Td 접종 가능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Q3. 입학하는 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한 경우에는, 로그인 후 '예방접종 관리'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회원이 아니라면,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에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예방접종도우미→'예방접종관리'→'자녀예방접종관리'→'아이정보 등록')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예방접종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도 접종내역 확인가능
 -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발급 받아 확인 가능 (민원24 (<http://www.minwon24.com>)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 단,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Q4.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

Q5. 모든 입학생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학예정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www.neis.go.kr)을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사업 대상인 초등학교4종, 중학교 2종백신의 접종 기록이 모두 전산등록(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방법]

Q6.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 양반응이 발생했던 경우** ②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③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입니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Q7.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

-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내 관할지역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하신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하신 경우에도 국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국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시 예방접종 의무여부]

Q8.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며,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학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의 접종률은 얼마나 되나요?

- 2017년 초등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대상인 4종 백신의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접종완료율은 각각 DTaP(5차) 96.8%, 폴리오(4차) 98.1%, MMR(2차) 98.2%,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90.9% 였습니다.
- 2018년 중학교 입학예정인 2005년생의 확인사업 대상인 2종 백신의 예방접종률*은 Tdap (또는 Td 6차) 75.1%, HPV(여학생) 60.6%입니다.

* 2017.12.31.기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현황으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DTaP-IPV 콤보백신 접종]

Q10. DTaP 5차, 폴리오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폴리오(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 4~6세 추가 접종 생략 대상자]

Q11.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 네, 꼭 접종 완료해야 합니다.
- 다만, 예방접종이 지연되어 만 4~6세 이전에 완료 했어야 하는 예방접종을 만 4~6세에 접종한 경우에는 만 4~6세 추가 접종을 생략합니다. 즉, **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했다면 만 4~6세에 접종하는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생략합니다.

* 지연접종(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상 아동]

Q12. 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TaP 백신 접종은 만 7세 미만에서만 실시하므로,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중학교 입학 여학생-사람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

Q13. HPV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HPV 백신을 통해 향후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 전암병변(암 전 단계의 병변)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는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중학교 입학시 예방접종 확인을 통해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9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암 중의 하나입니다.
 - * OECD 34개국 중 29개 국가에서 이미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Q14. 자궁경부암을 걱정하기에 12세는 너무 어린 것 같습니다. 왜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건가요?

-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는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성경험 전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 또한 성인연령에서보다 어린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면역력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만 14~15세 이후 1차 접종을 시작하면 3회 접종이 필요하지만, 만 9~13세에 1차 접종을 시작하면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신의 효과, 성 노출 시기, 접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만 12세 여아로 결정하였습니다.

Q15. 올해 HPV 백신의 무료접종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접종: 2005.1.1.~2006.12.31. 출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
- 2차 접종: 1차 접종 6개월 후 시행하며, 1차 접종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전까지 지원됩니다. 2005년생은 2018년 내에 1차 접종을 받아야 이후 2차 접종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 * 예: 2005년생이 2018.1.30.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2020.1.29.까지 2차 접종이 지원됩니다. 만약 2018년에 1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2019년부터는 1,2차 접종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자비 접종시 1회당 약 15~18만원 소요)
- 이미 자비로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005년생은 2018.12.31.까지, 2006년생은 2019.12.31.까지 2차 접종이 지원됩니다.

Q16. HPV 백신이 부작용 때문에 위험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신은 안전한가요?

- 네. 안전합니다.
- HPV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타 영유아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음, 두드러기**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반응이 있으며, 이런 증상은 보통 **2~3일 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 HPV 백신은 암 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 7월까지 2억 7천 건 이상 접종된 백신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 약 260만명(790만 건)이 특별한 이상반응 없이 접종을 잘 마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전히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17년 7월까지 안전성에 대해 총 7회 검토 및 발표)
- 일본에서 복합국소통증 5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힘들고**, 심리 불안반응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2014년 2월, 7월) 또한 일본의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학협회 17개 단체에서는 HPV 국가예방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2016년)
* 백신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난소부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SNS 글은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해당 국가(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그 사례들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Q17.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HPV 백신을 얼마나 맞았나요? 부작용 사례는 없었나요?

- 2016년 6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2003년생의 59%, 2004년생의 71%**가 1차 접종을 했고, **2005년생도 이미 절반 이상(64%)**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2017년 12월 기준)
-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약 67만건 접종 후 이상반응은 **53건(0.008%)** 신고되었고,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부작용 전문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들은 신고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증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Q18. HPV 예방접종 전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은 가능한 보호자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주세요.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방접종 전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HPV 예방접종은 의료인과의 건강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춘기 성장발달과 월경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 일부 청소년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접종받고,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의료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으면서 경과를 관찰하세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검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35)

국가에서는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이후는 수검자가 집중되므로 미리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

- 출생연도(2018년도:작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 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 간암, 대장암은 출생연도 상관없음

○ 검진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검진기관을 방문

※ 음식이나 채변 등 검진 전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기관 문의 후 이용

- 대장암 검진에 필요한 채변용지와 용기는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음

○ 검진항목 및 검진 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소지 보건소

○ 기타 (암환자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2018년 암검진비 지원 대상자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17년 기준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최대 200만원

- 신청 및 지급기간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봄 영농철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절약 생활화

(자료제공: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055-211-6254)

- ★ 절약된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희망의 단비가 됩니다.
- ★ 당신의 절수하는 두 손으로 희망을 담아 물 부족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띄워 보낼 수 있습니다.

□ 우리 도의 가뭄상황 및 전망

-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이 823.6mm로 평년(1,430.5mm)의 58% 불과
- 일부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50% 이하로 낮아 영농기까지 큰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됨

저수율 62.0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80.4	50.2	83.9	71.4	39.4	40.5	97.8	69.3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9.9	79.4	62.6	62.6	81.3	44.7	82.1	88.3	58.9	60.1

□ 물절약 생활화 요령

- 논·밭 토양의 수분 정도와 농작물의 상태 주의 관찰
- 집단못자리 설치, 배수로·논 물가두기 등 대대적 전개
- 모내기를 위한 최소한의 용수 사용과 물꼬관리 철저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 파종
- 농작물에 볏짚, 비닐 등으로 토양수분 증발 최소화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정비 및 비닐깔기 등 시행
- 물이 쉽게 고갈되는 곳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 사전 관리
- 가뭄이 오기 전에 관정·우물과 같은 용수원 개발
- 양수시설(수로), 양수장비(양수기) 수시 점검
- 벼 재해보험 가입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

(자료제공 : 농정국 축산과 ☎ 055-211-653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18.3.24일까지 모두 적법화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고, 이후 단계별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 무허가 축사란?

-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합니다.

○ 단계별 추진기간(무허가축사 면적기준)

구분	1단계('18.3.24일까지)	2단계('19.3.24일까지)	3단계('24.3.24일까지)
소	500㎡ 이상	400 ~ 500㎡	400㎡미만
돼지	600㎡ 이상	400 ~ 600㎡	400㎡미만
닭·오리	1,000㎡ 이상	600 ~ 1,000㎡	600㎡미만

※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전체대상)는 '18.3.24일까지 완료되어야함.

○ 적법화 대상

- 2013.2.20 이전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축사 및 불법 증축한 축사
-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등

○ 이행강제금 경감

- '18.3.24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이행강제금 50%이상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

○ 추진 절차(인·허가 등 처리절차)

- ① 불법축사 현황측량(측량설계사무소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의뢰)
- ② 불법건축물 시·군 민원실에 자진신고
- ③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시·군에서 10일이상 계고)
-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설건축물 요건충족 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
-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건축물 규모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 작성제출)
- 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 ⑦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 시·군 축산부서(T/F팀)을 통해 전문 상담가능.

○ 행정처분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7조) : 단계별 추진기간 이후

- 사용중지 2개월 · 축사폐쇄, 배출시설 허가취소,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시 행정처분 사항

항 목	1차	2차	3차	4차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	-
축사 배출시설 설치허가 안되었을 경우 (이법 또는 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용중지 1개월	폐쇄	-	-
축사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되었을 경우 (이법 또는 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2개월	폐쇄	-
축사 배출시설 변경·허가 안되었을 경우	경고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2개월	허기취소
축사 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되었을 경우	경고	경고	1개월	2개월

※ 사용중지 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하며, 최소 90만원 최대 3천6백만원이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30일/월) × 30만원/일 × 가축별 부과계수(0.1 ~ 2)]

○ 무허가 축사 유형

1. 내 소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은 경우
2. 타인의 소유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은 경우
3.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축사를 지은 경우
4. 허가는 받았으나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5. 허가를 받고 공사 중 위법 사항이 발생되어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
6. 준공을 받고 사용 후 일부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 한 경우
7. 건물은 적법하나 축산분뇨나 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 처리된 경우
8. 지을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저촉되어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9. 오래된 건물로서 측량오차로 위법 건축물로 분류된 경우
10.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 창고 퇴비사를 축사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12.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또는 설치불가)

○ 당부사항

1.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의원 발의(5명)중이나, 미추진 농가는 관망하지 말고 기간내 꼭 추진(접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 이행강제금 감면은 모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18.3.24.일까지입니다.
3. '18.3.24일까지 추진노력(측량, 설계, 접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차별화 지원 방안(행정지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2018.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접수) 될 수 있도록 당부바랍니다.

불법 소각 특별단속 실시

(자료제공: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055-211-6646)

농어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소각, 건설공사장의 드럼통 등 간이 소각시설에서의 폐기물 소각 행위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특별단속기간 : ' 18. 1. 29. ~ ' 18. 4. 30.

□ 점검대상 : 농어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환경민원발생 사업장 등

- (농어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 (건설공사장) 폐목·폐자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 (사업장)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

□ 점검방법 : 시·군 자체점검

- 128(환경오염신고전화) 신고체제 구축·재정비, 신고 활성화
- 불법소각 단시간 내 종료,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대처, 환경감시원 통합운영(환경부서, 청소부서)

□ 홍보사항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근절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 실시
- ※ 불법소각 근절음성파일(별첨) 활용

맥류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

(자료제공: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055-254-1234)

○ 맥류 생육재생기

- 월동기(11월 ~ 1월) 평균기온, 최저기온은 예년에 비해 각각 0.8℃, 1.3℃ 낮아 생육재생기는 2월 15일로서 평년보다 3 ~ 4일 늦음

< 맥류 생육재생기 판정 방법 >

1. 월동 후 새뿌리 2mm이상 자람
2. 잎 절단 후 1cm이상 자람
3. 일 평균 기온이 0℃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

※ 상기 3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새뿌리발생]



[잎자람]

○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

구 분	내 용
추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 : 2월 하순(생육재생기 후 10 ~ 15일) ◦ 추비량(요소기준) : 10.2kg/10a(겉보리, 쌀보리, 밀), 8.5kg/10a(맥주보리) ※ 제빵용 밀의 경우 2월 하순, 3월 중순의 2회에 걸쳐 요소비료를 10a당 5.1kg씩 나누어 시용 → 종자 단백질 함량 향상
제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엽 잡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약제 : 밧사그란(베타존) 액제 등 - 처리방법 : 물 1말(20ℓ)에 60mℓ를 녹인 후 10a당 100ℓ 씩 살포함 - 처리시기 : 잡초 엽수가 3 ~ 5매일 때 ◦ 독새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약제 : 하모니(치벤설푸론메칠) 입상 수화제 등 - 처리방법 : 물 1말(20ℓ)에 1.4g을 녹인 후 10a당 100ℓ 씩 살포함 - 처리시기 : 잡초 엽수가 2 ~ 3매일 때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밟아주기 및 흙넣기 : 동해로 인한 뿌리 들림 방지, 이삭 수 증가, 무효분얼 억제, 도복 경감 및 잡초 발생 억제 등 ◦ 배수구 정비 : 봄철 습해 방지

경남대표도서관 이용 안내

(자료제공 : 경남대표도서관 ☎ 055-254-4832)

○ 경남대표도서관 개요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 이용시간 : 평일(월~목)·주말 09:00~18:00(단, 청소년관내 학습실은 24시간 운영)
- 휴 관 일 :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 대출권수 및 기간 : 3권 14일

○ 회원 가입 자격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경상남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등록자

○ 회원 가입 방법

-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홈페이지 가입
- 구비서류를 지참 후 경남대표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 승인 및 회원증 발급
 - ※ 회원 승인을 받지 않은 준회원은 홈페이지만 이용가능(대출 불가)

○ 회원증 발급 안내

-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발급
- 담당자 서류 확인을 거친 후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급
- 지참하여 할 서류
 - 성 인 : 사진, 주소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중 고 생 :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 유아 및 초등학생 :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서류
 - 경남소재 직장인·대학생 : 신분증, 사원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
- 발 급 처 : 본관1층 장애인자료실, 본관3층 일반자료실2, 어린이관
 - ※ 회원이 아니더라도 도서 열람은 가능